

#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년 6월 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개정이유

-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도세감면 면적범위를 확대하여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 위함

### 주요골자

- 최초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

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입주자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

- ⇒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

※ 현행 도세감면조례상 감면 내용 (취·등록세)

- 전용면적 40㎡이하 : 100% 면제
- 전용면적 40㎡~60㎡이하 : 50% 경감

조 례(안) : 별 첨

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

기타 참고자료 : 별 첨

#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한)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 까지 적용한다.

③(적용례)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이전에 취득하였거나, 1999년 6월 30일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 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④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